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제1조 보증의 종류

약정인이 귀 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귀 공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보증으로 하며, 약정체결 이후에 새로이 취급하는 보증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약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한도액

① 약정인이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의 한도액은 (금 원정)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의 한도는 귀 공사의 내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의 변동에 따라 증감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 약정 유효기간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귀 공사로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로 합니다.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증신청 및 발급

- ① 각종 보증에 관한 귀 공사의 보증서는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의 해당한도액 범위내에서 수시로 발급받기로 합니다.
- ② 보증의 방법은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제5조 의무이행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 관계 법령등에 의한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다하여 귀 공사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6조 담보제공

-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각기 귀 공사 소정의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② 귀 공사에 대하여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담보중 액면금액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당좌수표를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귀 공사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란등을 보충할 권리를 귀 공사에 부여하겠습니다.

제7조 보증료

- ①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때에는 귀 공사의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귀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겠습니다.
- ② 귀 공사의 보증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1항의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겠습니다.
- ③ 제2항의 따라 납부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를 귀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가보증료에 대하여 납부지정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5퍼센트로 날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보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겠습니다.
- ④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상호간에 연대입보한 사업주체와 시공자 중 시공자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발급 이후 부도·파산·보증사고 등 연대보증인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자를 연대입보토록 하겠으며, 신규 시공자 변경승인일 현재의 보증약정관계자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재산정하여 시공자 변경승인일부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보증료(보증발급시의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한다)를 지체없이 납부하겠습니다.
- ⑤ 공동시행자 상호간에 연대입보를 하는 경우 상위신용평가등급인 시행자가 보증사고(부도, 파산 등)시에는 사고일부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 잔여시행자의 신용평가등급과의 차이에 대한 보증료를 지체없이 납부하겠습니다.
- ⑥ 귀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음에 있어 분납보증료를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일부부터 납부기일까지 연 2퍼센트로 날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납보

증료에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만일, 분납보증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분납보증료에 대하여 납부기일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5퍼센트로 날짜 계산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대상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겠습니다.

⑦ 약정인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보증료 환불이 유보된 경우 약정인은 미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8조 통지의무

① 약정인이 보증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귀 공사가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 이행청구를 받거나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9조 면책사항

①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 인장이 귀 공사에 신고된 인감과 대조하여 이를 보통의 주의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때에는 인장의 도용·위조 기타 사고가 있을 경우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② 이 약정서 기타 보증절차에 필요하여 약정인이 제출한 서류를 귀 공사가 보통의 주의로써 취급한 때에는 추후 그 서류에 위조·변조 기타 사고가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10조 배 상

①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 공사에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귀 공사에 임대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귀 공사에 배상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 공사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겠습니다.

③ 귀 공사가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오피스텔분양보증·임대보증금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임대)이행 또는 승계시공을 하는 경우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즉시 배상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귀 공사가 지출한 비용에서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취득한 수입금을 차감한 잔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초과하는 지출금에 대하여 각 발생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연 6%의 이자

④ 제3항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제11조 부대채무

귀 공사에서 지급한 채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소송비용과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귀 공사에 부과된 (간주) 취득세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공사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

제12조 사전구상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며,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으며, 귀 공사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귀 공사가 정하는 보증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2. 귀 공사에 대한 이 약정 또는 각종 약정상의 의무나 보증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
3. 귀 공사의 채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귀 공사가 인정할 때
4.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귀 공사에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권자가 귀 공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한 때

제13조 변제충당

-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담보물로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인장 · 상호 · 대표자 · 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15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단, 보증료 채무 제외)에 대하여도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②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인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약정을 체결한 공동사업은 실제 비율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귀 공사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16조 주택법등

- 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택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건축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동시행령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② 제1항의 법령과 귀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이 개정될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함),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특약

- ① 약정인은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후 분양(임대)계약시 분양(임대)계약자들이 보증약관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에 동약관을 40×60cm 이상의 크기로 확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② 분양(임대)계약서에 보증약관내용 및 기타 귀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삽입하기로 하며,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시에도 입주금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귀 공사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입주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③ 귀 공사로부터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을 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증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이하 “보증의 내용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라 한다)을 받아 귀 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 ④ 귀 공사로부터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입주금을 귀 공사가 관리하거나 약정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약정인은 제3항의 “보증내용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 외에 분양(임대)계약서 사본과 분양(임대)계약자의 신분증 사본을 귀 공사에 제출하는 등 귀 공사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귀 공사가 귀 공사 내규에 따라 입주금 인출 제한 등 의 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⑤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업장에 임직원(자사·협력업체의 임직원 및 가족 포함)의 분양(임대)이 있는 경우, 임직원 분양(임대)명세서 등을 제출하겠으며, 초기분양률이 70% 미만이고 임직원 분양(임대)의 누적 분양(임대)세대수가 전체분양(임대)세대수의 3% 이상일 경우에는 귀 공사가 기존의 분양(임대보증금)대금 납부계좌 폐쇄 및 귀 공사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귀 공사 홈페이지에 분양(임대)률[임직원분양(임대)률 등 포함]을 게시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⑥ 약정인이 귀 공사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귀 공사가 관리하거나 약정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귀 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귀 공사가 귀 공사 내규에서 정한 사유 해소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직접 처분(충당, 납부 등)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귀 공사 내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귀 공사가 관리하거나 약정인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귀 공사가 귀 공사 내규에서 정한 사유 해소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직접 처분(충당, 납부 등)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⑦ 약정인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외의 저당권 설정 및 권리제한 사항의 등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입주일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때(법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⑧ 임대사업자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령 및 귀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여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 약정인은 별도의 보증계약 갱신이 없더라도 이 약정서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약정인은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귀 공사 내규에 따라 입주예정자명단과 분양대금(임대보증금)수납자료, 공정확인서 및 하도급대금지급내역확인서 등 귀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귀 공사에 지체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지분석이 필요하다고 귀 공사가 판단하여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귀 공사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귀 공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귀 공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실을 게시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⑩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은 후 귀 공사에서 정한 공정율에 미달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귀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귀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분양대금(임대보증금)의 관리를 귀 공사가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폐쇄하고 귀 공사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정율에 따라 수납된 분양대금(임대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귀 공사 분양대금(임대보증금)관리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⑪ 약정인은 분양(임대)계약자에게 갖고 있는 분양대금(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상 하자(제3자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분양대금(임대보증금)채권을 귀 공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관리 및 사전구상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⑫ 약정인은 소유권보존등기(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경로함으로써 보증기간((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또는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이 확정되는 때에 분양보증료 및 임대보증금보증료가 정산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귀 공사가 귀 공사내규에 따라 그 정산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의 지연등으로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경우에는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⑬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공정률 미달,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 보증약관으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 공사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⑭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분양보증 약관의 보증사고 발생 시 귀 공사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이행 방안을 결정하여 보증사고 이후 보증채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잔여입주금(보증사고 당시 분양계약서의 납부기일이 경과한 입주금은 제외)의 연체료율은 귀 공사 내규에서 정한 연체료율과 당초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 중 낮은 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가 이 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한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귀 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이 약정서로 동 내용에 대해 위임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제19조 합의관할

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귀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귀 공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과 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0조 특약사항

-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제공하는 신탁부동산, 미분양주택, 귀 공사가 발행한 주식도 제6조제2항의 담보에 포함되며,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6조제2항 및 전항의 담보는 귀 공사에서 정한 방법 및 가액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귀 공사가 제13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상계권 행사를 포함한다)하더라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43조에 의한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 등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④ 법인에 대하여 주택을 분양(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임대)계약 이전에 귀 공사에 대하여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위 각조항과 별도 수령한 보증약관 내용 및 약정인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보증발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귀 회사와의 (보증)채무약정, 채권관리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회사가 본인(개인인 약정인,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회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채무약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보증 발급 및 보증료 납부(환불) 안내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본인 부동산현황,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 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公示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당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등) 임대보증금보증발급시 (국토교통부, 보증체결 유지·관리·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공·조회의 목적	법인의 (보증)채무약정에 따른 대표자, 경영실권자, 과점주주 등의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판단, 신용 관련 통계 모형 개발 및 분석, 신용도 판단, 기타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조회 하는 사항] ☐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등급, 신용평점정보, 다른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조회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증상당 신청시까지 또는 상담이후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약정 등 거래관계 종료시점까지(보증 및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제공·조회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평가 효력과 법인의 (보증)채무약정에 관계된 동의자 개인의 (보증채무)약정 종료 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유효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한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고객관리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본 동의서는 본인이 관계자(대표자, 경영실권자 등)인 다른 회사가 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 용		동 의 자 (본인)	
수집·이용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성 명	(서명)
제공·조회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 대 보증인 성 명	(서명)
제공·조회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귀 회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공사는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제공여부 확인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귀 공사가 보유한 약정인의 신용정보를 연대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서 제공한 약정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가 이 약정의 체결 여부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제공받은 약정인의 신용정보

※ 약정인의 신용정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여부 확인란에 "v" 표시 할 것

약정인의 신용정보 사항	대상여부 확인란
공사의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고객의 대표자등이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등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 신청	
국세 및 지방세 연체	
공사의 용자리금(이자1개월 연체포함)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연체	
공사가 약정인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에 강제집행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이 접수(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제외)	
공사에 대한 채무를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 기일에 미상환	
고객상시모니터링지침이 경보 또는 주의	
기타 세칙 제7조에서 정한사유 ()	

20 년 월 일

약정인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성명 : (대표자) _____ (인/서명)

연대보증인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성명 : (대표자) _____ (인/서명)